

- 감사보고서 -

2025년 안전보건 및 정보보안 점검 특정감사

2025. 7.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 대상 현황	5
Ⅲ. 감사 결과	9
Ⅳ. 처분요구 일람표	13
[붙임 1] 감사 처분요구서	
[붙임 2] 현지조치사항 명세	
[붙임 3]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안전보건 분야

최근 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평가」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나, 우리 공사의 최근 5년간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정체되어 개선의 구체적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공사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을 조기에 발굴하여 제도적 보완과 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정보보안 분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최근 타 공공기관에 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직의 정보보안 역 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사이버보안 실 태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본 감사는 공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지침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내 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정보보안 리 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안관리체계 정착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감사 대상기관, 범위 및 중점

이번 감사는 전 부서의 안전보건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 대상기간은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정보보안 분야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첫째,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직·예산·계획 등 안전보 건경영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및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진 단하였다.

둘째,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전 임직원 대상 내PC지키미 등을 활용한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 조 치 및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업무의 적정성을 진단하였다.

셋째, 안전보건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내부통제체계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하는 컨설팅 감사를 진행하였다.

□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간

본 특정감사는 다음 [표 1]과 같이 감사실장(감사반장)을 포함한 내부 감사인 6명, 변호사·IT·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 6명, 교차감사인 1명 등총 13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1] 특정감사 감사반 편성

구분	직·성명	담당업무	비고				
	실장 🕾	○ 특정감사 총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팀장 ◈	o 안전보건 및 정보보안 관련 정부 심사평가 대응 적정성 점검					
내 부 감	차장 ♡	o 공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소방법·전기안전법 등 안 전보건 관련 법령 및 주요 기준·지침 준수 여부 점검					
년 사 인	과장 ★	O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이행·위험성평가 수행 등 공사 안전 보건경영체계 구축 적정성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대리 △	보건경영제계 구국 직정장 점검 및 개신사항 노출 O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관련 법률 및 내부 절차 준수여부 점검 O 정보보안 법령·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관련 시규 및 내부					
	대리 ▷	지침 등 준수 여부 점검					
	전문위원 ▽ (변호사 자격)	o 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점검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사	팀장 ◁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내 전 문	과장 ◇ (CISA 자격)	그 이 정보와 사업 보이전 걸토 얼룩 과터 절차 수숙대로 절걸					
가	차장 ○ (CPPG 자격)	ㅇ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관련 법률 및 내부 절차 준수여부 점검					
	사원 ◎ (정보보안기사 자격)	o 정보보안 법령·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관련 사규 및 내부 지침 등 준수 여부 점검					
외 부 감	변호사 ☆ (공사 청렴옴부즈만)	○ 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점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내부통제체계 구축 적정성 점검					
감 사 인	과장 ☎ (Q공단 안전관리부)	이 내부감사인 대상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관련 교육 수행 이 공사 고정자산 대상 현장점검 수행					

감사반은 2025년 5월 28일 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15영업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공사의 주요 고정자산인 한국광고문화회관·한국방송회관·kobaco연수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지감사 기간 중인 6월 16일 Q공단 안전 관리 전문가를 교차감사인으로 초빙하여 내부 감사반을 대상으로 안전보 건경영체계 구축 및 현장안전점검 착안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 월 17일 광고문화회관 및 18일 방송회관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에 동 행하였다.

□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로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 대상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 6. 30. A국장 등이 참석하여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관련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실은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 검토를 거쳐 2025. 7. 9. 감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 현황

□ 감사 대상 업무 조직 및 인력 현황

○ 안전보건 분야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2025년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A국 내B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B단은 공사 소유 고정자산인 프레스센터,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및 양평 코바코 연수원의 안전관리와 전 임직원의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B단을 포함한 A국의 정원 및 직급별 현원 현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A국 정원 및 직급별 현원 현황

(단위: 명)

Ι							,	전원			
	7 H			현원(직급별)							
	구분	정원	1급	2급	3갑~5급	전문직	계	대비			
자 산	C팀 (D단/B단)	12	1	1	7	1	10	△2			
관	E파트	4	_	1	4	1	6	+2			
리 국	리 국 F파트		_	1	3	_	4	_			
합계 20		20	1	3	14	2	20	-			

주: 1. 2025. 4. 30. 기준

2. C팀 내 국장직(A국장, 1급) 포함, 현원표에서 임금피크전문직(별도 정원) 제외

자료 : 공사 내부 통합인사자료 재구성

○ 정보보안 분야

공사의 정보보안관리 업무는 G센터 내 H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H단은 IT 정보보안 전략 수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취약점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H단을 포함한 I팀의 정원 및 직급별 현원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I팀(H단) 정원 및 직급별 현원 현황

(단위: 명)

그ㅂ	TJ OI	현원(직급별)					
구군	정원	1급	2급	3갑~5급	전문직	계	대비
I팀 (H단)	11	1	1	7	_	9	△2

주: 1. 2025. 4. 30. 기준

2. 표 내 국장직(G센터장, 1급) 포함, 현원표에서 임금피크전문직(별도 정원) 제외

자료 : 공사 내부 통합인사자료 재구성

□ 사업 현황

○ 안전보건 분야

A국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주요 고정자산별 안전 관련 주요 단위 업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A국 사업 현황

사업 구분	사업 내역
안전·보건 관리	공사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인선 또신 전다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 관련 대외평가 업무 총괄
	공사 주요 고정자산(광고문화회관·방송회관·연수원) 대상 임대차, 대관
사산관리·운영	등 시설 사용 관련 업무, 임대료 등 요금제도 운영 및 수금관리, 임대차
사건된다.문양	용역·공사·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보호 및 위탁업체 관리, 시설현황
	점검 및 수선 유지관리, 안전관리 업무 등

자료 : 공사 「업무분장지침」 참고

A국은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정부 대외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의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안전관리등급 심사평가」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최근 5개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평가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S-D등급 평가제)	B등급	B등급	C등급	B등급	B등급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 심사평가 (1-5등급 평가제)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정보보안 분야

공사 G센터 H단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주요 단위 업무는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G센터(H단)의 정보보안 관련 주요 사업 현황

사업 구분	사업 내역
IT전략·사업기획	전사 중장기 정보화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신규 정보화 사업 기획·도입·구축 등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 등
IT정보보호	IT 정보보안 전략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행, IT 정보보안 정책서·강령·지침 등 매뉴얼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관리, 정보보안 평가 대응 및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개인정보보호 유출방지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자료 : 공사 「업무분장지침」 참고

G센터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및 「공 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평가」 수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의 최근 평가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최근 5개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평가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 (72.65점)	미흡 67.6점	미흡 (75.99점)	미흡 (74.22점)	보통 (83.14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양호	S등급	A등급	S등급	(미실시)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련 법령 및 공사 「정보보안지침」및「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전담부서 직원 뿐 아니라 공사 전 임직원은 정보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2025년 안전보건 및 정보보안 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일부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내재화되기 위한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었다.

○ 안전보건 분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B단'을 신설하고, 공사 실정에 맞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의 기틀을 마련한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안전기사·공조냉동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격 보유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기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임직원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유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혈압계·체성분 분석기·당뇨측정기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월별로 보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직원 대상 무료 보건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D단의 사례는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예산 효율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이다. 연수원은 2022년 수해로 약 1.5억 원까지 폭등했던 재산종합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하층 차수벽 및 이동식 차수판설치, 우수관 확장 등 다각적인 예방 조치를 완료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 강화 노력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경쟁입찰을 유도한 결과, 2025년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54.1% 절감된 약 4,800만 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금번 감사의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결과 사업 장 현장의 안전관리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식별되었다. 고정식 사다리의 시건장치가 부실하거나 개구부의 방호조치가 미흡하고, 옥상 등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고 표지가 부족한 점 등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공연장 및 창고 등에 소화기 비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피난안내도가 부실한 점 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 체계에도 일부 공백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교반기·승강기 모터의 회전부가 안전 덮개 없이 노출되어 있거나, 작업장 조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안 분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모의 해킹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과 정보화 사업 담당자 등 책임자 대상 심화 교육을 병행하여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내PC지키미 및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통제 시스템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여 내부보안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4년 연속 '미흡'에 머무르던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결과를 2025년 '보통' 등급으로 끌어올린 점 역시 정보보안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전사적인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전임직원 및 책임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에서최근 4년간 'S' 또는 'A'등급의 최상위 수준을 유지한 점은 매우 우수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임직원의 기본적인 보안 지침 준수 의식은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개인PC의 보안패치 등 '내PC지키미'의 기본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한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보호조치 없이 PC에 저장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 점이 식별되었다.

위와 같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유도하고, 우수한 성과창출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총 13건의 처분요구 및 3건 의 현지조치, 1건의 모범사례를 도출하였다.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합계					시정(금액)								
총 건수	신분 조치 인원	재정 조치 금액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소계	추징	감액	기타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17	_	-	_	_	_	_	_	_	_	-	9	4	_	3	1

□ 모범사례

수해 예방 조치를 통한 보험료 절감(D단)

가. 추진배경

-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연수시설 재산종합보험료 폭등(기존: 약 500만 원 → 증가: 1.5억 원)
- 시설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조치 및 과도한 보험료 예산 절감을 통한 연수시설 수지 개선 도모

나. 세부추진내용

- (예방 조치) 선제적 수해 예방 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 조치
 - 취약지역 화합관 지하층 차수벽 설치 및 야외수영장 이동식 차수판 설 치(우수유입 원천 차단)
 - 우수관 관로 확장, 산책로 지반 강화 등 분야별 예방 조치 완료
- (예산 절감) 경쟁입찰 참여 유도를 통한 가격경쟁 유도
 - 보험설계사 대상 수해 예방 조치 현황, 점검표, 매뉴얼 등 제출 등 참여 독려

다. 추진성과

- 지속적인 수해 예방 조치 및 경쟁입찰 참여 유도로 보험료 예산 감축
 - 2023년 : 150,509,694원(견적제출 업체 수 : 1개)
 - 2024년 : 104,670,800원(견적제출 업체 수 : 2개, 전년대비 30.5% 절감)
 - 2025년 : 48,027,700원(견적제출 업체 수 : 7개, 전년대비 54.1% 절감)

Ⅳ 처분요구 일람표

일련 번호	대상부서	제 목	처분요구	감사자
1	E파트 F파트 D단	고정자산별 옥탑층 등 추락주의 안전표지 부착 필요	권고	83 ★
2	E파트 F파트 D단	고정자산별 기계실 등 시설 내 안전보건표 지 관리 강화	권고	Ø: ★
3	E파트 F파트 D단	고정자산별 옥상, 기계실 등 돌출부위 전도 방지 조치 필요	개선	Æ\$ ◆
4	E파트 D단	광고문화회관 및 연수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 개선 필요	권고	*
5	F파트 D단	방송회관 및 연수원 창고시설 소화기 비치 필요	개선	*
6	E파트	광고회관 고정식사다리 시건장치 보완 필요	권고	£8° ◆
7	E파트	광고회관 옥상 쿨링타워 고정사다리 등받이 울 설치 개선 필요	개선	58° △
8	E파트	광고회관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승 강모터 덮개 설치 필요	개선	58° △
9	E파트	광고문화회관 기계실 응축수 탱크 접근 개 구부 관리 개선	개선	8 8 ★
10	E파트	광고문화회관 전기실 등 조도 개선 필요	개선	Æ ★
11	F파트	방송회관 코바코홀 화재대응장비 및 피난안 내도 개선 필요	개선	58° △
12	F파트	방송회관 정화조실 교반기 덮개 설치 필요	개선	58° △
13	D단	연수원 강당 화재대응 장비 보완 필요	개선	△ ▷

붙임 1 감사 처분요구서

권 고

목 고정자산별 옥탑층 등 추락주의 안전표지 부착 필요 제 관계부서 A국 E파트, F파트, D단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F파트·D단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 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ㆍ회계ㆍ임 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 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옥탑층에는 각 층별 공조장치와 연결된 냉각탑, 관련 배관, 엘리베이터 기계 실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허가된 근로자만이 옥탑층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층, 지하 6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옥탑층에는 각 층별 공조장치와 연결된 냉각탑, 방송 수신을 위한 안 테나 등 전파장치,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과 헬기착륙장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허가된 근로자만이 옥탑층에 접근할 수 있다.

kobaco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평에 지 상 4개층, 지하 1개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및 화합 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건물 설계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있어 층 별 건축면적 차이로 인해 베란다 공간이 설치되어있으며, 각 호실에도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옥탑층에는 각 층별 공조장치와 연결된 냉각탑, 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 나 등 전파장치, 배기구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자동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옥탑 층에는 허가된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각 고정자산별 옥상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한 바대로 관계 근로 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 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기 및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각 고정자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광고문화회관 옥탑층의 경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120cm 이상의 안전난간이 적법하게 설치되어있지만, 근로자의 외부추락위험이 있는 베란다 부분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헬기착륙장이 설치된 한국방송회관 옥탑2층의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추락위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확인되어 이를 추가 부착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kobaco연수원의 경우, 객실층 복도와 연결되는 베란다 시설에는 안전난간 및 충분한 수의 추락주의 안내표지가 부착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객실과 이어진 발코니 시설에는 추락주의 안내표지가 부착되어있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옥탑층 또한 충분한 수의 추락주의 안내표지가 부착되어있지 않아 이를 추가 부착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표 1] 공사 고정자산별 추락주의 안내표지 추가 부착필요 공간 내역

소관부서	고정자산명	추가부착 필요 공간
E파트	한국광고문화회관 (서울 송파구)	옥탑1층 베란다 부분
F파트	한국방송회관 (서울 양천구)	옥탑2층 헬기착륙장 부분
D단	kobaco연수원 (경기 양평)	각 객실별 발코니 안전난간 부분 본관·화합관 옥탑층 부분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옥탑층에 출입하거나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의 안전 유의를 위하여 추락 주의 안전표지를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A국 E파트·F파트·D단은 옥탑층에 출입하는 관계 근로자 및 연수방문객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하여 추락주의 안내표지를 추가 부착하시기바랍니다.

권 고

제 목 고정자산별 기계실 등 시설 내 안전보건표지 관리 강화관계부서 A국 E파트, F파트, D단내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F파트·D단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 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 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 층, 지하 5 개 층 및 옥탑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영선창고 등을 두고 있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 층, 지하 6개 층 및 옥탑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실, 기타 기자재창고 및 영선창고등을 두고 있다.

kobaco 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 평에 지상 4개 층, 지하 1개 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및 화합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강의장, 소모품창고 등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출입금지, 화기성 물질 경고 등의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및 kobaco 연수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계실 및 전기실 등에 설치·부착된 안전보건 표지 일부가 별다른 코팅 처리 없이 종이에 잉크로 인쇄된 형태로 되어있거나, 부착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안전보건표지는 색이 바래지거나 물에 젖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찢어지거나 탈착되어 그것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표지판 또는 코팅지 등으로 보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 부착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상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근로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파손될 염려가 적은 재질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A국 E파트, F파트, D단은 시설 내에서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제 목 고정자산별 옥상, 기계실 등 돌출부위 전도 방지 조치 필요 관계부서 A국 E파트, F파트, D단

1. 업무개요

욧

내

A국 E파트·F파트·D단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 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 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이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층, 지하 6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kobaco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평에 지상 4개층, 지하 1개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및 화합 관으로 구성되어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관 등 기타 돌출부위, 배수구 등으로 인한 기타 함몰부위는 통행 중인 근로자의 걸려넘어짐 또는 발빠짐 등으로 인한 전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널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타이거 마크, 기타 주의의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표지 부착이 필요하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각 고정자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광고문화회관 옥탑층의 경우 냉각탑 등에 연결된 다수의 배관이 출입 근로자의 발목 높이 에 설치되어있으나, 걸려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표지 부착 등이 미흡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방송회관 지하 기계실의 경우, 기계실 중간부 콘크리트로 튀어나온 넓은 돌출부위가 존재하나, 바닥면이 돌출되지 않은 부분과 똑같아 이를 확 인하지 못한 근로자가 보행 중 걸려넘어지는 전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kobaco연수원의 경우, 본관 및 화합관 옥탑층 바닥면에 우수 등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배수구로 인해 생긴 함몰부위에 발이 빠져 통행 중인 근로자가 전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옥상에 설치된 탈기구1)로 인해 생긴 돌출부위로 인해 발이 걸려넘어져 근로자가 전도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¹⁾ 콘크리트 지붕 내부에 생긴 습기와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토록하여 방수층의 들뜸 현상 등을 예방하는 장치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각 고정자산별 옥탑층 및 지하 기계실 등에 출입하거나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의 전도사 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표지 또는 타이거마크 등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E파트·F파트·D단은 옥탑층 및 기계실 등에 출입, 통행하는 관계 근로자의 전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 타이거마크 등 추가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권 고

제 목 광고문화회관 및 연수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 개선 필요 관계부서 A국 F파트, D단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주요 고정자산인 광고문화회관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단은 같은 지침에 따라 연수원 자산시설 관리와 함께 연수업체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 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각 층별로 관계 규정에 맞추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 운용 중에 있다.

kobaco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평에 지상 4개층, 지하 1개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및 화합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층별로 관계 규정에 맞추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 운용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르면, 기술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의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일컫는다.

주요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기준)」 2.4.5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 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광고문화회관 및 kobaco연수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고문화회관 및 kobaco연수원 건물 내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함 문 외부에는 외국어와 시각적 그림이 모두 포함된 사용요령 표지판이 부착되어있었지만, 함 문 내부에는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기준은 2022년 12월 개정된 것으로써, 개정 이전에 설치된 옥내소화 전함에 소급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나, 화재발생 등 유사시 사용자가 신속하게 사용요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내소화전함 문 내부에도 추가적으 로 사용요령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광고문화회관 및 kobaco연수원은 옥내소화전함의 문 내부에도 사용요령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A국 E파트, D단은 건물 내 옥내소화전함 문 내부에도 사용요령 표 지판을 추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제 목 방송회관 및 연수원 창고시설 소화기 비치 필요 관계부서 A국 F파트, D단

내 용

1. 업무개요

A국 F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단은 같은 지침에 따라 연수원 자산 시설 관리와 함께 연수업체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층, 지하 6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5층 및 지하 6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실, 기타 기자재창고 및 영선창고 등을 두고 있다.

kobaco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평에 지상 4개층, 지하 1개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및 화합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관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강의장, 소모품창고등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 건물 등 업무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또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 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위임된 소방청고시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위임된 소방청고시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선창고, 소모품창고 등 창고시설에도 벽과 출입문으로 그 거실이 구획되어 나뉘어져있으며, 그 거실 면적이 33㎡ 이상일 경우에는 각 창고 실내에도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방송회관 및 kobaco연수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방송회관 지하 영선창고 내 소화기 미비치

방송회관은 일반업무시설로 그 건물 전체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방송회관 지하 5층 영선창고를 확인한 결과, 영선창고 면적이 33㎡을 초 과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별도의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나. kobaco연수원 지하 소모품창고 내 소화기 미비치

방송회관은 교육원(연수원 등 기타시설)으로써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kobaco연수원 지하 소모품창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창고 면적이 33㎡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별도의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 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방송회관 및 kobaco연수원은 해당 창고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F파트, D단은 지하 창고 내 효율적인 화재 대응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맞추어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권 고

제 목 광고회관 고정식사다리 시건장치 보완 필요

관계부서 A국 E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주요 고정자산인 광고문화회관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 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옥탑층에는 기계실 옥상, 냉각탑 옥상 등에 접근하기 위해 고정식사다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 주는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 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고층부에 접근하는 고정식사다리의 경우,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광고문화회관 옥탑층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옥탑 2층 및 냉각탑 옥상으로 접근하는 고정식사다리의 시건장치를 플라스틱 체인으로 만 설치하고 있어 이를 손쉽게 비켜 사다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확인되 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옥탑층 고정식사 다리의 시건장치를 개선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A국 F파트는 옥탑층 고정식사다리의 시건장치를 교체하는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제 목 광고회관 옥상 쿨링타워 고정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개선 필요 관계부서 A국 E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주요 고정자산인 광고문화회관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 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옥탑층에는 기계실 옥상, 냉각탑 옥상 등에 접근하기 위해 고정식사다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해야하며, 등받이울의 시작점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설치되어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광고문화회관 옥탑층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옥탑 기계 실 위 옥탑 2층으로 접근하는 고정식사다리의 총 높이가 7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받이울의 시작점이 3m 이상부터 설치되어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옥탑층 고정식사 다리의 등받이울 설치 시작점을 변경하는 등 개선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F파트는 옥탑층 고정식사다리의 근로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받이울 시작점을 낮추는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제 목 광고회관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승강모터 덮개 설치 필요 관계부서 A국 E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주요 고정자산인 광고문화회관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층, 지하 5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화물 등 고중량 물품, 이삿짐 등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옥탑 1층에 승강모터가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되어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 모터가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덮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끼임, 휘말림 사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광고문화회관 옥탑층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승강모터가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출입 또는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F파트는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교반승강모터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광고문화회관 기계실 응축수 탱크 접근 개구부 관리 개선 관계부서 A국 E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 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 업무, 회관 안전관리 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 층, 지하 5개 층 및 옥탑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영선창고 등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 고정자산 내 작업 공간에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발빠짐 등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 광고문화회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계실 응축수 탱크 접근 장소 개구부에는 별도의 방호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근로자가접근 시 발빠짐 및 추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근로자의 발빠짐,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E파트는 기계실 내 응축수 탱크 접근 장소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광고문화회관 전기실 등 조도 개선 필요

관계부서 A국 E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E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 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 업무, 회관 안전관리 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지상 20개 층, 지하 5개 층 및 옥탑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등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등 작업 기준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경우라도 75럭스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동안 광고문화회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고회관 지하 전기실 및 기계실 등 일부 시설 작업공간의 조도가 낮아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조도를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E파트는 기계실, 전기실 등 시설 내 작업공간의 조도를 개선하여 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방송회관 코바코홀 화재대응장비 및 피난안내도 개선 필요 관계부서 A국 F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F파트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 위 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층, 지하 6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회관 2층, 3층에는 총 면적 2,427㎡의 대중문화시설인 "코바코홀"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코바코홀은 주로 연예인 대상 팬사인회, 기자회견, 아동극 공연 등을 사유로 사용되고있으며, 관계부서는 코바코홀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공연업계 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연장의 공연 기획시행 및 공연장운영, 시설 사용 관리를 총괄하는 대관업체를 입찰로 선정, 해당 업무를 일체위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방송회관 코바코홀의 피난안내도 작성 및 설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방송회관 코바코홀은 공연장 시설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제24조제5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을 피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피난안내도를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야하며,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고시한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에 따르면, 피난안내도의 내용 및 표시, 설치위치에 관하여 소화기 등 소방설비는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 표시하여야하며, 규격에 관하여 피난안내도는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이 있어야하며, 그 크기는 A3(420x297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방송회관 코바코홀에는 소방청고시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작성 및 설치하고, 코바코홀 내 피난시설 또는 소방설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난안내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 방송회관 코바코홀의 화재대응장비(소화기) 설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방송회관 코바코홀은 위 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며, 이에 따라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위임된 소방청고시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에 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방송회관 코바코홀에는 소방청고시에 따라 적정한 보행거리 이내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방송회관 코바코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방송회관 코바코홀의 피난안내도 작성 및 설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코바코홀 출입구에 게시된 피난안내도 점검 결과, 피난안내도 내 게시된 소화기 위치에 실제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난안내도가 A4 크기로 제작, 부착되어있어, 소방청고시에서 정한 크기 규격(A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코바코홀 피난안내도에 작성된 소화기 위치 표지를 실제 위치 와 맞게 수정하고, 소방청고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추어 피난안내도를 다시 제작하여 부착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나. 방송회관 코바코홀의 화재대응장비(소화기) 설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코바코홀 내 소화기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이 정한대로 소형소화기 기준 보행거리 20m 이내 각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청고시를 준수하기 위해 소화기를 추가 비치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방송회관 코바코홀의 피난안내도를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소화기를 추가 비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F파트는 화재 예방 및 효율적인 피난 정보 안내를 위하여 소방청고시 등 관계 규정에 맞추어 코바코홀에 설치된 피난안내도를 개선 설치하고,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방송회관 정화조실 교반기 덮개 설치 필요

관계부서 A국F파트

내 용

1. 업무개요

A국 F파트는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방송회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지상 21개층, 지하 6개층 및 옥탑 2개층으로 이루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에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정화조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정화조실 내부에는 정화 효율을 증대하고 슬러지생성 방지를 위해 교반기계를 설치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모터 등으로 작동되는 정화조실 내 교반기계 또한 그 모터가 노출되어있을 경우,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덮개 등을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방송회관 정화조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화조실 근 로자의 출입통로에 교반기계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정화조실 내 출입 또는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선] A국 F파트는 지하 정화조실 내 교반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연수원 강당 화재대응 장비 보완 필요

관계부서 A국 D단

내 용

1. 업무개요

A국 D단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공사의 각 고정자산 대상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시설관리와 보호 및 자회사 등 위 탁업체 관리업무, 회관 안전관리업무 및 경리·회계·임대차관리업무 및 연 수업체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baco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만여평에 지상 4개층, 지하 1개층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수시설 건물로 본관, 화합관및 교육동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동 1층 및 2층에는 연수 방문단체의 강연, 강의 등을 진행하기위한 강당이 설치되어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원은 교육원 시설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위임된 소방청고시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에 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연수원 강당에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보행 거리 이내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소화기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를 강 당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연수원 강당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강당 내 소화기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이 정한대로 소형소화기 기준 보행거리 20m 이내 각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소화기를 추가 비치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는 축광표지판이 벽에 제대로 부착되어있지 않아, 강당 이용객이 강당 좌석에 착석한 상태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벽 등에 축광표지판을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감사의견에 동의하며, 연수원 강당 내소화기를 추가 설치하고 소화기 위치를 알리는 축광표지판을 개선 부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권고] A국 D단은 기준 준수를 위해 연수원 강당 내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고 축광표지판 부착 위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현지조치 사항 명세(총 3건)

□ 현지조치 사항 명세(총 3건)

번 호	건명	세부내용	조치내용
1	내PC지키미 점검 미흡	-사규 「정보보안지침」 제28조에 의하면, PC사용자는 사용 관련 일체의 보안관리에 책임이 있음 -지침에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비밀번호 관리,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나 이행 미흡(16명)	윈도우 접속 비밀번호 재설정,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등 당사자
2	개인정보보호 미흡	-사규 「개인정보지침」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허용 권한 외에 복제, 출력 등의 이용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함 -PC필터를 활용한 내부망PC 점검 결과,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등 지침 위반 확인(21명)	불필요 개인정보포함 파일 삭제 또는 암호화 등
3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사규 「정보보안지침」 제30조에 의하면, 인터넷 PC 보 안관리를 위하여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 그램 및 비인가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HTS를 설치하고 사용함(21명)	HTS 등 불필요 비인가 프로그램 삭제 등 현지조치 완료

붙임 3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생략)

심의조정 내역 연 번 심의 처분 소관부서 심의 건명 의견 요구 E파트 고정자산별 옥탑층 등 추락주의 안전표지 F파트 전원찬성 권고 1 부착 필요 D단 E파트 고정자산별 기계실 등 시설 내 2 F파트 전원찬성 권고 안전보건표지 관리 강화 D단 E파트 고정자산별 옥상, 기계실 등 돌출부위 전도 개선 3 F파트 전원찬성 방지 조치 필요 D단 E파트 광고문화회관 및 연수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4 전원찬성 권고 부착 개선 필요 D단 F파트 방송회관 및 연수원 창고시설 소화기 비치 개선 5 전원찬성 D단 필요 6 광고회관 고정식사다리 시건장치 보완 필요 E파트 전원찬성 권고 광고회관 옥상 쿨링타워 고정사다리 7 E파트 개선 전원찬성 등받이울 설치 개선 필요 광고회관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8 E파트 개선 전원찬성 승강모터 덮개 설치 필요 광고문화회관 기계실 응축수 탱크 접근 9 개선 E파트 전원찬성 개구부 관리 개선 E파트 광고문화회관 전기실 등 조도 개선 필요 개선 10 전원찬성 방송회관 코바코홀 화재대응장비 및 11 F파트 전원찬성 개선 피난안내도 개선 필요 12 F파트 방송회관 정화조실 교반기 덮개 설치 필요 전원찬성 개선 13 D단 연수원 강당 화재대응 장비 보완 필요 전원찬성 개선